

제 호

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

○ 기관명(은행명):

○ 소재지:

○ 기관장(은행장)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